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예비비 사용 승인(영유아보육료 구비 부족분)**

1. 여성가족과-43554(2014.12.9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「영유아보육료 구비 부족분 예비비 사용」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 중구재무회계규칙」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고자 합니다.

■ 예비비 사용 요청

- 요청예산 : 1,420,375천원
- 요청사유 : 2014년 예산 편성 당시 6개월분만 편성하였고, 시 조정(특별)교부금 지원 신청으로 추경에도 미반영하였으나, 특별교부금으로 구비 부족분이 미충당됨
- 사용목적 : 영유아보육료 구비 부족분 사용

■ 예비비 사용 승인

- 승인예산 : 1,420,375천원
- 승인사유
 -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2013년 시행 당시 지자체 재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각 자치구별로 구비분담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,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구비 부족분을 지원 받았음.
 - 우리구 또한 2014년 본예산 편성 시, 재정보전금 지원 중단 등으로 재정 여건상 구비 분담금을 일부 편성하지 못한 바,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음.

- 이에따라 서울시예 구비 부족분에 대해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기는 하였으나 구비 부족분 전액이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충당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,

- 또한 여성가족과 예산중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고, 특별교부금 교부 지연으로 시기적으로 추경예산 편성도 어려워, 법정 필수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을 승인함.

■ 예산변동내역

(단위: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액	승인액	변경액	
부서명	사업명	편성목(통계목)			감	증
기획예산과	예비비 재원관리/예비비/예비비	예비비(예비비)	2,685,220		△1,420,375	
여성가족과	보육가족및여성복지/보육서비스수준제고/영유아보육료지원	민간이전(사회복지보조)		1,420,375		1,420,375

붙임 : 2014년 영유아보육료 예산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 1부. 끝.

주무관 이은임 예산팀장 김영혜 기획예산과장 장형태 기획재정국장 이재영

부구청장 12/18 김찬곤

협조자